## ◉여수해양경찰서공고 제2026-26호

「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」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1월 23일

여수해양경찰서장

# (여수해양경찰서)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

**1. 개정이유**

「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」 재검토 기한(매 3년) 도래에 따른 고시 내용 검토 및 종전 고시 폐지 조치

**2. 주요내용**

**가.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2개소(모사금·무슬목 해수욕장) 신규 지정**

- 해수욕장 이용객이 많고, 인근 수상레저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어 레저기구와 입욕객 간 충돌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에 따라 **개장기간 모든 수상레저기구 대상 수영경계선 안쪽 및 바깥쪽 10m 안의 해역 금지구역으로 지정**

**나.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4개소(나로도·덕흥·대전·발포 해수욕장) 제외**

- 최근 3년(2024~2026) 해수욕장 이용객 및 레저활동 수요가 적어 **금지구역 지정 유지 실효성 낮은 해역 제외**

**다. 지정 현황 변경: 현행 12개소에서 개정 후 10개소 조정[별첨]**

- 해수욕장 9개소, 교통안전특정해역 1개소

**라. 기존 지정구역 연변 부재에 따른 신규 부여**

**마. 재검토 기한 변경:**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431호)에 따른 재검토기한 변경

**바. 부칙:** 종전의 여수해양경찰서 고시 **제2024-1호는 폐지**한다.

* **[별첨] 여수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**

| 연번 | 명칭 | 금 지 구 역 | 대 상 | 설정기간 |
|---|---|---|---|---|
| 1 | 만성리 해수욕장 (여수) | 수영경계선 기준 내측 해상 및 외측 10m이내 해상 | 모든 수상레저기구 | 해수욕장 개장기간 내 |
| 2 | <신설> 모사금 해수욕장 (여수) | | | |
| 3 | <신설> 무슬목 해수욕장 (여수) | | | |
| 4 | 방죽포 해수욕장 (여수) | | | |
| 5 | 장등 해수욕장 (여수) | | | |

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6 | 남열 해수욕장<br>(고흥) | | | |
| 7 | 익금 해수욕장<br>(고흥) | | | |
| 8 | 율포 해수욕장<br>(보성) | | | |
| 9 | 웅천친수공원<br>해수욕장<br>(여수) | 수영경계선 기준 내측 해상 및<br>외측 10m이내 해상 | 모든<br>수상레저기구 | 매년<br>7월1일<br>~<br>해수욕장<br>폐장 시까지 |
| | | 지오클럽(34-44-44N, 127-40-09E)<br>~<br>장도 큰바위(34-44-32N, 127-39-56E)를<br>직선으로 연결한 선의 웅천친수공원 해수욕장 쪽 해상<br>(수영경계선 기준 내측해상 및 외측 10m이내 해상 제외) | 동력<br>수상레저기구 | |
| 10 | 교통안전특정해역<br>(여수구역) |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<br>1. 북위 34도50분23초, 동경 127도46분52초<br>2. 북위 34도43분15초, 동경 127도49분13초<br>3. 북위 34도40분18초, 동경 127도54분40초<br>4. 북위 34도35분41초, 동경 127도55분22초<br>5. 북위 34도35분41초, 동경 127도59분52초<br>6. 북위 34도39분47초, 동경 127도59분40초<br>7. 북위 34도43분05초, 동경 127도53분22초<br>8. 북위 34도43분16초, 동경 127도51분34초<br>9. 북위 34도44분01초, 동경 127도50분34초<br>10. 북위 34도44분57초, 동경 127도49분58초<br>11. 북위 34도46분13초, 동경 127도49분55초<br>12. 북위 34도50분53초, 동경 127도48분22초<br>13. 북위 34도50분23초, 동경 127도46분52초 | 무동력<br>수상레저기구 | 연중 |
| - | <제외><br>~~나로도 해수욕장(고흥), 덕흥 해수욕장(고흥)~~<br>~~대전 해수욕장(고흥), 발포 해수욕장(고흥)~~ | | | |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·단체 또는 법인은 2026년 12월 13일(일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여수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(수상레저계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

| 개 정(안) | 수 정(안) | 사 유 |
|---|---|---|
| | | |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연락처

다.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

- 주 소: (우)597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문수로 111 여수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(수상레저계)
- 전 화: 061-840-2449 / FAX: 061-840-2949
- 전자우편: han3821@korea.kr